

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

신청인	이름		연락처	
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			
배우자	이름		연락처	
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

본인은 배우자 _____와 _____년부터 _____년째 사실상 이혼관계이며, 사실과 다를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신청인 성명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상기와 같이 사실상 이혼관계임을 확인합니다.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
확인자 성명 : _____ (서명 또는 인) 관 계 : _____

생 년 월 일 : _____ 연 락 처 : _____

주 소 : _____

확인자 성명 : _____ (서명 또는 인) 관 계 : _____

생 년 월 일 : _____ 연 락 처 : _____

주 소 : _____

년 월 일

※ 자녀 부양관계 변동은 아래 추가 서류제출 필요(해당자에 한함)

1. 가족관계증명서
2. 이혼판결문(법률상 이혼), 이혼소송서류,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
3.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4. 친권 및 양육 협의서(법류상 이혼), 양육사실 확인서
 -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의 확인자 요건
 -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, 「민법」 제775조에 따른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으로 하되,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·통·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

수원시장 귀하